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압록강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아래부터는 쌍방이라고 한다)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의 태왕과 경제활동에 편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단둥시지역에 압록강국경다리를 공동으로 건설하며 관리 및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정에서 아래의 정의들을 사용한다.

《국경다리》란 기본다리와 인입다리, 해당한 부속시설들을 의미한다.

《기본다리》란 압록강물길을 횡단한 다리부분을 의미한다.

《기본부분》이란 기본다리중에서 강주류를 횡단한 교각사이의 구간이 가장 넓은 부분을 의미한다.

《인입다리》란 기본다리와 로반을 련결하는 다리부분을 의미한다.

《봉쇄건설구역》이란 압록강수역을 포함하여 쌍방 국경대의 다리건설구역 부근의 격리된 구역을 의미한다.

《다리건설인원》이란 봉쇄건설구역안에서 다리건설에 종사하는 해당한 인원들을 의미한다.

제 2 조

국경다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단둥시에 위치하며 구체적인 지점은 쌍방 해당부문들이 현지 조사와 론증을 진행한후 확정한다.

제 3 조

쌍방의 협정리행을 책임진 조정부문은 조선측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며 중국측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이다.

제 4 조

쌍방의 국경다리건설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는 주관부문은 조선측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이며 중국측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와 상무부이다.

제 5 조

쌍방의 국경다리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집행기관은 조선측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안북도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관리국이며 중국측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교통청과 단둥시인민정부이다.

제 6 조

국경다리건설은 국경하천인 압록강 강바닥의 위치와 강안, 국경선의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국경지역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이 지역의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국경다리를 건설하고 투자하는데서 쌍방의 책임계선은 기본다리의 중간선이다.

조선측구간의 기본다리과 인입다리는 중국측이 원조하여 건설한다.

쌍방은 국경다리를 건설한후 공동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며 관리와 보호의 책임계선은 기본부분의 중간선이다.

제 7 조

쌍방은 중국측이 기본다리와 인입다리의 설계를 맡아하고 설계방안은 쌍방 주관부문들이 공동으로 심사확정하기로 하였다.

국경다리건설은 중국측의 건설기준과 기술규범에 따라 하며 구체적인 문제들은 쌍방 해당부문들이 조사설계과정에 서로 조정할수 있다.

쌍방은 자기측 인입도로와 보조시설건설을 각기 책임지고 다리건설과 동시에 완공하여야 한다.

쌍방은 국경통과지점의 국경통행검사와 세관 및 검사검역시설건설을 각기 책임지고 다리건설과 동시에 완공하여야 한다.

제 8 조

쌍방은 필요한 구역을 자기 국내의 봉쇄건설구역으로 확정하여, 정한다. 봉쇄건설구역의 건설형식은 국경통행검사와 국경경비 및 세관 등 부문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쌍방 국내의 봉쇄건설구역주변에 해당한 차단식별표식을 세워놓아야 한다.

봉쇄건설구역의 작업 및 휴식시간은 지방정부가 국경통행검사와 국경경비 및 세관부문들과 합의하여 따로 확정한다.

쌍방 해당부문들은 각기 자기 나라법에 따라 자기측 봉쇄건설구역과 인원, 설비, 물자 및 운수수단들의 출입을 감독관리한다.

제 9 조

다리건설과 관계없는 선박들은 봉쇄건설구역안의 압록강수역에 정박할수 없다.

제 10 조

쌍방 해당부문들은 자기측으로부터 봉쇄건설구역으로 출입하는 다리 건설인원들의 수속을 간소화하며 건설인원들은 자기 나라의 법규정과 쌍방의 해당한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효력있는 통행증을 가지고 명단에 따라 통과한다.

다리건설인원명단과 다리건설작업시 사용하는 설비와 물자, 운수수단 명세서양식은 지방정부가 국경통행검사 및 세관부문들과 토의하여 확정하며 조선어와 중국어로 각각 작성한다. 시공단위는 명세서를 작성하며 쌍방 국경통행검사 및 세관부문이 확인한후 서로 교환한다.

다리건설인원들과 설비, 운수수단은 쌍방 해당부문들이 토의확정한 식별표식을 소지하거나 붙이고 다녀야 한다.

제 11 조

쌍방 지방정부는 다리건설시작전이나 필요한때 쌍방 국경통행검사와 국경경비 및 세관부문들사이의 회담을 조정하여 봉쇄건설구역에로의 출입과 관련한 해당한 사업을 진행하며 인원수와 책임자이름, 출입시간 및 필요한 설비와 물자, 운수수단들을 통보한다.

봉쇄건설구역에서의 작업이 끝나면 책임자는 자기측 다리건설인원들을 제정된 시간에 책임지고 데려간다.

시공과정에 봉쇄건설구역에 립시로 출입하여야 할 인원과 설비, 물자, 운수수단들은 24시간전에, 긴급한 경우에는 30분전에 쌍방 국경통행검사와 국경경비 및 세관부문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조선측 해당부문들은 공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중국측의 설비와 물자, 운수수단들의 봉쇄건설구역출입의 편리를 보장하며 수속을 간소화한다.

제 13 조

다리건설인원들은 기본다리과 인입다리건설기간 필요한 통신수단을 사용할수 있다. 쌍방 해당부문들은 통신수단을 사용하기전에 그 류형과 수량, 형 및 번호, 주파수, 호출부호를 토의한다.

제 14 조

일방은 자기 국경내에 있는 봉쇄건설구역안에서 상대방 다리건설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건설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재산과 문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리건설인원들은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나라의 법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 15 조

쌍방 해당부문들은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국경다리건설과 관리 및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회담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한 문건을 작성할수 있다.

제 16 조

쌍방 해당부문들은 국경다리건설과 관리 및 보호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 17 조

쌍방은 협상을 통하여 이 협정의 의정서를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 협

정을 수정보충할수 있다.

제 18 조

이 협정은 수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 협정을 폐기시킬데 대하여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이 협정의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본다리와 인입다리가 건설되어 자동차가 통행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협정은 2010년 2월 25 일 중국 단둥에서 체결되었으며 조선어와 중국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된 두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